

#붙임

1. 일반특별공급 세대

- 주택건설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87-1번지

주택형 (전용면적, m ²)	배정 세대수				비고
	84m ² A	84m ² B	84m ² C	계	
일반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18	9	27	54	공급세대수의 10% 배정

※ 일반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2.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 비치, 무주택 세대주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무주택 서약서로 접수 후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계약시 구비)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 비치)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의 해당자에 한함)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및 단독세대주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p>※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p> <p>※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p> <p>※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p>※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거주요건 적용 철회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주택청약 및 공급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택공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서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예: 1년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자로 볼 수 없으며, 동 규정은 동 규칙 제36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각종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4.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제36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우선 공급 거주요건이 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에서는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공급 원칙을 준수하여 추천 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 사업주체는 해당 거주요건을 고려한 추천 순위에 맞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에 추천 대상자를 보완 제출받아 입주자를 선정해야만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노부모 부양) 청약 신청자라도 공급 규칙 제4조제5항의 거주요건을 지켜야만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의 입주자 선정방법·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102조제13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